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검 토 보 고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27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제정안의 개관	2
2. 총괄적 검토	4
3. 주요 조문별 검토	7
가. 법률의 목적, 공제회의 법인격(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7
나. 회원(안 제6조)	9
다. 조직(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12
라. 사업 및 재정(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	16
마. 보칙 및 벌칙 관련 규정(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22
바. 부칙	2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8. 22.

다. 회부연월일 : 2025. 8.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은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현재 지방직, 교원, 경찰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아왔으나,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음.

이에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회비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복지에 환원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국가직공제회는 대출 지원, 보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공직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국가직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서,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과 회원, 조직 및 운영, 사업, 재정 및 회계, 지도 및 감독, 벌칙 등 본칙 27개 조문,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직행정공제회를 설립하되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하였음.

회원 자격은 국가공무원 등을 일반회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퇴직자는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은 정관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부담금 납부 및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그리고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도록 하고, 이사장 및 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주요 사업 및 재정과 관련하여, 공제회는 회원 급여 지급, 복지후생시설 설치·운영,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과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래 급여를 위한 준비금 적립 및 결산상 순이익금 적립 의무를 규정하고, 재무상대표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며, 자산 운용 심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체계】

구분	조문 내용	
본칙	제1조	목적
	제2조	법인과 등기
	제3조	사무소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5조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제7조	조직
	제8조	대의원
	제9조	대의원회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1조	임원의 정수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조	임원의 직무
	제14조	직원의 임면
	제15조	사업
	제16조	재정
	제17조	회계연도
	제18조	예산 및 결산
	제19조	준비금의 적립
	제20조	이익금의 처리
	제21조	경영정보의 공시 등
	제22조	소멸시효
	제23조	대표권의 제한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민법」의 준용
	제26조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7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공제회의 설립 준비

2. 총괄적 검토

현재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요 공제회는 총 7개(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 중임.

《특별법에 따른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공제회》

구 분	근 거 법 령	감독기관	회원수	자산규모	임직원 (현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71년)	교육부	92만명	74.6조원	484명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법('83년)	국방부	17만명	20.5조원	159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90년)	행안부	33만명	31.3조원	150명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법('91년)	경찰청	13만명	5.8조원	80명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법('91년)	소방청	6만명	2.5조원	34명
교정공제회	교정공제회법('15년)	법무부	1.5만명	0.4조원	19명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법('02년)	과기정통부	13만명	14.8조원	88명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행정부 전체 국가공무원¹⁾(76만명, '24년말 기준) 중 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공무원과 일부 부처 일반직공무원만 공제회 가입이 가능하고,²⁾ 이를 제외한 행정부 및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약 2.8만명)의 가입이 가능한 공제회가 없는 상황으로,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2) 국가공무원 중 일부의 일반직공무원(약 5.5만명)은 대한지방공제회, 교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에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일반직공무원(약 12.7만명)은 가입 가능한 공제회가 없음.

국가공무원 중 다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를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후생복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직행정공제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³⁾

《행정부 국가공무원 공제회 가입 여부》

공제회 가입 가능(15개 중앙행정기관)		공제회 가입 불가
특정직(57.6만명) ▶ 경찰공제회 : 경찰청, 해양경찰청 ▶ 소방공제회 : 소방청 ▶ 교원공제회 : 교육부(교원) ※ 외무, 검사 4천여명 제외	일반직(5.5만명) ▶ 지방공제회 : 행안부 ▶ 군인공제회 :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 ▶ 교정공제회 : 법무부(교정본부) ▶ 교원공제회 : 교육부(일반직) ▶ 과기인공제회 : 과기부, 산업부, 특허청, 기상청, 원안위, 우주청	일반직(12.7만명) 공제회 가입이 가능한 일부 중앙행정기관(15개)을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 행정부 이외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소속 공무원(약 2.8만명)도 공제회 없음

자료: 인사혁신처

그동안 국가공무원을 위한 공제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⁴⁾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종의 다양성 등으로 실제 단체의 설립이나 이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 바는 없음.

이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공무원에게 다양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3) 연합뉴스, 「정부-중앙부처 공무원노조, 단협 체결…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 2025.8.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2031100001>

4) 인사혁신처는 2023년 「중장기 공무원 후생복지 전략」 연구용역(한국인사행정학회 수행)을 통해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방안을 검토하였고, 국회에서도 정책토론회(김종민·신정훈·윤건영의원 주최, '25. 7. 3.)를 통해 국가공무원 대상 행정공제회 설립 및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모색한 바 있음.

것으로, 국가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공직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다만, 공무원 직종별로 공제회를 두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타 공제회의 가입대상에 국가공무원을 추가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직행정공제회의 신설 초기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일정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3,017억원의 국가 출연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출발한 과학기술인공제회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직행정공제회에 대한 초기 자본 지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조기 달성을 도모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봄.⁵⁾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형평성 제고와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와 전체적 법률구성 체계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회원 자격, 조직 의사결정 구조, 재정 및 초기 재원조달 방안 등 일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국가공무원을 위한 별도 행정공제회 법률 제정은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현재 운영 중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국가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음.

5) 동 제정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가 제출됨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법률의 목적, 공제회의 법인격(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직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과 등기) ① 국가직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정안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국가직 행정공제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밖에 정치활동의 금지, 정관의 내용은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다른 공제회 법률에서도 두고 있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나. 회원(안 제6조)

-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2.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⑤ 회원은 정관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낸 부담금의 반환을 정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가직행정공제회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회원의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요 공제회의 회원 자격》

구 분		내 용
군인 공제회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국방부분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직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공제회의 임·직원
경찰 공제회	일반 회원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특별 회원	일반회원으로서 총 3년 이상 가입한 사람
한국 교직원 공제회	일반 회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 공제회의 임·직원
	특별 회원	일반회원으로서 정년·명예·상병 퇴직자 또는 임기만료 퇴직자, 일반회원으로서 만60세 이상으로 퇴직한 자, 일반회원으로서 1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한 만55세 이상인 자
대한 지방 행정 공제회	일반 회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행정자치부 및 행정자치부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기타 타 부서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
	특별 회원	한아름목돈예탁에 가입공제회의 회원으로 있던 분이 정년 또는 퇴직하고, 공제회가 시행하여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코자 하는 자
대한 소방 공제회	일반 회원	소방 공무원,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공제회의 임·직원
	특별 회원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일반회원으로 미가입된 공무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서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퇴직 회원	일반회원으로 있던 자 중 퇴직하고 공제회가 시행하는 급여에 가입하여 공제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

자료: 인사혁신처

제정안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따라 가입대상 규모를 산출해보면, 일반회원은 최대 15만명 내외로 추산되며,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회원은 다른 공제회가 정관으로 특별회원의 자격을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였던 자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설립 초기에는 특별회원 가입 인원은 없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따른 국가직행정공제회 가입대상 규모 추산》

▶ **(가입대상)** 총 15.5만명

※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12.7만명 + 헌법기관 2.8만명

▶ **(일반회원)** 가입대상 중 80% 가입을 가정할 경우 약 12.4만명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전체 가입대상 중 87.3% 가입('24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다만, 공제회 설립 초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회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 외에도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되, 기존 공제회와의 중복 가입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회원 자격 요건을 제정안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조직(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7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8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8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정관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이 임시회를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하며,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은 정관에 따른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정관에 따라 임면(任免)한다.

국가직행정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의원회는 회원 중에서 정관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의 변경,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6명으로 구성되며,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운영과 사무를 총괄하며,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도록 함.

국가직행정공제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공제회 내부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회 구성을 구성원의 유형별로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고,

대의원회에 집중된 권한을 소관 부처와 운영위원회로 분산하기 위하여 군인공제회 의사결정 구조와 유사하게 운영위원회 구성 권한의 일부를 소관 부처에게 부여하고 운영위원회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기존 공제회 의사결정 구조 비교》

구 분	국가직행정공제회(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의원회 임원 선출	▶ 이사장· <u>이사</u> 및 감사 선출	▶ 이사장 및 감사 선출	임원 선출 기능 없음 (운영위원회 권한)
운영위원회 구성	▶ 이사장 ▶ 대의원회 선출 대의원 6명	▶ 이사장 ▶ 국방부 장관 지명· <u>위촉</u> <u>3명</u> ▶ 대의원 3명(대의원회 선출)	▶ 이사장 ▶ 교육부 장관 지명 3명 ▶ 대의원 3명(대의원회 지명)
임원 선출 및 임기	▶ 이사장·이사 : 대의원회 선출 → 행안부 장관 승인 ▶ 감사 : 대의원회 선출	▶ 이사장·감사 : 대의원회 선출 → 국방부 장관 승인 ▶ <u>이사 : 운영위원회 선출</u> → 국방부 장관 승인	▶ 이사장 : 운영위원회 선출 → 교육부 장관 승인 ▶ 이사 : 이사장이 임면 →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 승인 ▶ 감사 : 운영위원회 선출 → 교육부 장관 승인

자료: 인사혁신처

라. 사업 및 재정(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제15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5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경영정보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따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산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

2. 내부·외부 회계감사 결과

3.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4.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정관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제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제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은 국가직행정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공제회 중 경찰공제회와 대한소방공제회를 제외한 다른 공제회와 사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함.

《공무원 대상 공제회 법률 사업 내용》

법률명	사 업
한국교직원 공제회 (제11조)	· 회원에 대한 급여 ·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 수익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군인공제회 (제14조)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 · 수익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제16조)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수익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경찰공제회 (제16조)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수익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대한소방 공제회 (제17조)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수익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교정공제회 (제15조)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수익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자료: 인사혁신처

제정안은 공제회의 재정을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국가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로 인정되는 다른 공제회도 각각의 근거 법률에 정부보조금을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한지방행정공제회(前 사단법인)나 경찰공제회(前 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前 사단법인) 등의 경우, 이미 운영되던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자산을 승계하였으나, 국가직행정공제회는 법률 제정을 통해 새롭게 공제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설립 초기에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 외에 사업 비용을 충당할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2002.12.26.)을 통해 신설된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설립 당시 국가 출연금 등으로 3,017억 원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출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공제회의 초기 자본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직 공무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조기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정부보조금 지원을 규정한 공제회 법률》

법률명	내 용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u>정부보조금</u> 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지급) <u>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u>
군인공제회법	제15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u>정부보조금</u>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u>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u>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제17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경찰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u>국가의 보조금</u>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u>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u>
대한소방 공제회 (제17조)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1. 공제회의 보호·육성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 ⑤ (생 략)
교정공제회 (제15조)	제16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u>국가의 보조금</u>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u>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u>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17조 (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의 부담금 2. <u>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u> 3. <u>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u>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u>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교부할 수 있다.</u>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국가직행정공제회의 설립과 설립 초기에 안정적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지원 사례를 준용하여 보조금 이외에 출연금 등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재정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칙 제2조(공제회의 설립 준비)에서 설립 비용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⁶⁾

6) 다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경우 제정 당시 부칙에서 설립 비용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음.

마. 보칙 및 벌칙 관련 규정(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과 이사는 공제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국가직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국가직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소멸시효(안 제22조), 대표권의 제한(안 제2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4조), 「민법」의 준용(안 제25조),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안 제26조 및 제27조)는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회원 권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법인 형태의 공제회를 규정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준비)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의 최초 임원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공제회의 설립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에서는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일과 본칙의 내용에 따라 공제회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부칙 제2조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의 설립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공제회 운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342